

석사학위논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고 종 권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조 병 철

석사학위논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고 종 권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조 병 철

2002년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범위	3
제 2 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반적 고찰	4
제 1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	4
1. 기업회계의 개념	4
2. 세무회계의 개념	5
제 2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6
1. 기업회계의 목적과 기능	6
2.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7
제 3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8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체계적 관련성	8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유형별 관련성	9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존형태	11
제 4 절 기업회계의 손익계산	13
1. 기업회계상의 이익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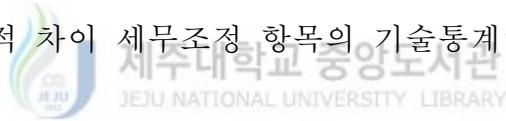
2.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14
3. 순손익의 계산	17
제 5 절 세무회계의 손익계산	18
1. 조세 및 조세법의 원칙	18
2. 과세소득의 의의	29
제 3 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분석	31
제 1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의 발생원인	31
1.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31
2. 손익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33
3.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34
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차이	37
제 2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발생 형태 및 세무조정현황	38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의 형태	38
2. 기업의 세무조정 현황 분석	41
제 4 장 양 회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이 조정방안	45
제 1 절 주요국가의 양 회계의 관계 및 조정방안에 관한 논의	45
1. 미국에서의 경우	45
2. 일본에서의 경우	48
3. 우리 나라에서의 경우	51

제 2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관한 조정방안	55
1.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조정방안	55
2. 손익의 인식기준에 따른 차이 조정방안	58
3.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조정방안	60
4.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차이 조정방안	63
5. 기업이익계상의 개선방안	66
제 5 장 결 론	69
참 고 문 헌	72
ABSTRACT	74



표 목 차

<표 3-1> 손익의 인식기준에 따른 양 회계의 차이	34
<표 3-2> 자본의 개념에 따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35
<표 3-3>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양 회계의 차이	37
<표 3-4>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	40
<표 3-5> 세무조정개수의 기술통계량	41
<표 3-6>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의 기술통계량	42
<표 3-7> 영구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의 기술통계량	43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회계란 투자자와 채권자, 경영자 그 외의 수많은 정보이용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판단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업회계란 기업의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등을 재무제표등의 형태로 외부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의 한 분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기업이익을 계상한다. 반면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납세자간의 소득금액 산정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서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세수확보와 조세의 균형유지 및 조세의 합법적 징수를 목적으로 한 회계로서¹⁾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출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업회계를 존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세법이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존하나 세법과 기업회계기준간에 충돌이 생길 경우 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정부수립후부터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첫째,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1) 오기수, 「실전세무회계」, 조세통람사, 1999, p. 10.

선도한 시기(1949~1974) 둘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존시기(1975~1994) 셋째, 기업회계의 우위의 시기(1995~1998) 넷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존시기(1999~현재)의 순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학자들의 연구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립된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정책적 측면 및 실무적인 편의에 부응하기 위해 표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일관된 원칙이나 논리에 의하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관계가 변천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세법 개정시마다 특정 항목에 대한 기업회계 우선적용 또는 세무회계 우선적용을 번복하여 규정함으로써, 많은 실무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혼선과 번거로움을 제거함은 물론 세계경제가 개방화·국제화되어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춰 나가도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을 분석·고찰하고, 양 회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불필요한 세무조정사항이 되는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또한 꼭 있어야 할 것은 좀 더 명확한 규정으로 양 회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론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회 과학 분야의 조사방법 중 문헌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본 논문의 목적이 양 회계의 상호관련 및 차이를 분석함

으로서 양 회계의 상호접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성격상 문헌적 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회계기준과 조세관련 법규와 학술논문 학술잡지, 조세와 관련된 각종 서적 등을 참고하여 양 회계의 상호관련성 및 차이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적 중심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제 1 장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 및 방법과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 2 장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반적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제 3 장에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들을 알아보았다.

제 4 장에서는 양 회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에 대한 조정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제 5 장에서는 결론으로 본문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조정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반적 고찰

제 1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

1. 기업회계의 개념

기업회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다.²⁾ 기업회계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세무회계(tax accounting), 비영리회계(not for profit accounting)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³⁾

통상 기업회계란 우리 나라 기업회계기준 제2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재무회계를 통칭한다고 할 수 있다.⁴⁾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일반적인 이해관계자(현재의 투자자나 금융기관, 채권자, 장래 투자나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투자자나 채권자 그리고 거래처와 경쟁기업, 회계분석가나 연구자, 종업원이나 노동조합 등)를 보고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투자나 여신 등에 필요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로서 재무회계는 대외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외부보고회계라고도 한다.⁵⁾ 재무회계는 기업이 임의로

2) 조달영, 「법인세법정해」, 조세통람사, 1996. p.105

3) 이근수, 「현대회계학원론」, 법문사, 1996. pp.35~37

4) 세무회계의 상대개념으로 보편적으로 일컬어지는 기업회계란 엄격히 말한다면 재무회계라 할 것이나, 본 논문에서도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세무회계의 대응개념으로 기업회계로 칭하고자 한다.

운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하는 강제적 회계제도이다. 재무보고를 위하여 사용되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의 양식이나 용어·보고기한·보고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회계처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과목의 명칭과 회계처리 방법도 모두 기업 회계기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들에게 표준화된 회계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회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는 경영자가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회계로, 이는 경영관리의 한 수단으로서 경영자에게 유용한 판단자료 또는 통제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회계이며, 대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내부보고회계라고 한다. 관리회계는 제품의 생산원가를 계산하고 예산과 실제원가와 차이분석 등과 같은 원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계량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적정한 재고수량과 원재료의 재주문 시점을 결정하고, 생산라인의 증설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제품을 직접 제조할 것인가 외부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게 한다.

2. 세무회계의 개념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세법규정에 따라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적정한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출하여 국세청에 납세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처리되는 회계인 반면, 기업회계는 신뢰성의 원칙을 추구하는 회계로서 세무회계는 세무수익과 세무비용을 이용하고 기업회계는 경영수익과 경영비용을 이용함으로써 차이가 상

5) 송쌍중, 「세무회계론」, 법문사, 1997, p.19

이한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⁶⁾ 또한 세무회계는 국가 재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회계제도이기 때문에 특정한 납세자나 특정의 개별 경제주체만을 위한 회계제도가 아니라 회계의 사회적 기능이 사회적인 공평과 일치하도록 공평한 자원배분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회계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기업과 국가사이에 조세부과와 관련되는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국가가 조세부과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재정조달의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 14조 1항, 2항)과 합법성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 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이 국가에 제공하는 세무회계정보나 납세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5조)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세무회계는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기록·계산·정리한 자료를 통하여 측정되는 회계이다. 하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이 상이함으로 각기 고유의 독립된 영역을 유지하여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1. 기업회계의 목적과 기능

기업회계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작성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기업은 경제주체로서 출자자, 채권자, 채무자, 거래처,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 국가 및 공공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6) 송쌍중, 전계서, p.21

관계 하에 성립된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표하며 기업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인 회계보고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계가 바로 기업회계인 것이다.

기업회계의 기능은 특정기업과 관련된 재무적 자료를 총체적인 이론체계 내에서 수집·검토·요약하여 해당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선택기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은 이러한 회계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특정의 기업실체는 흔히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사회현상 또는 특정산업 등의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그 자체가 관심의 쟁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회계는 미시적이고 조세정책은 거시적이라 할 수 있다.



2. 세무회계의 목적과 기능

세무회계의 국가활동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인 기업의 소득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계산하여 조세부담능력에 알맞은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목적을 둔다. 조세는 국가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의 기업이익을 기초로 하여 조세목적의 입장에서 조세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무조정 과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됨으로, 기업회계를 떠나서 독자적인 회계질서를 갖추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회계를 바탕으로 하여 조세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인 세무회계는 기업회계를 존중하게 된다.

기업성과에 대한 사회적 배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이러한 회계는 국가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에서 재무정보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제 3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상호관계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체계적 관련성

좁은 의미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는 다같이 기업경영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회계이기 때문에 그 실천면이나 내용면에서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계정체계, 처리내용, 재무제표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⁷⁾

첫째, 재무적 사건을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세무회계를 위주로 하여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 또는 이를 절충하여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현행 세무회계는 독자적인 기장체계를 가지지 않고 기업회계를 준용한 기장체계를 가진다.

둘째, 처리내용상으로 보면 세무회계의 과세수익과 기업회계의 수익은 서로 일치하는 면이 크다. 따라서 세무회계의 손금과 기업회계의 비용 또한 서로 일치하는 면이 많다.

세무회계에서의 과세소득계산의 기본원리인 $\text{익금} - \text{손금} = \text{과세소득}$ 이라는 산식은 기업회계의 순손익계산의 기본원리를 표현하는 $\text{수익} - \text{비용} = \text{순손익}$ 이라는 기본원리와 일치한다.

셋째,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별도의 세무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기업회계의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 회계는 보고서식에서 서로 일치하는 면이 많다.

7) 송쌍중, 「세무회계론」, 조세통람사, 1995, p.42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유형별 관련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또한 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 판단인가를 전제로 한 양회계의 유형별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다.⁸⁾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동일성

세무회계는 독자적인 계산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세소득의 산정은 모두 기업회계에 맡기고 기업의 결산보고서상에 표시된 소득금액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 과세하면 충분하다는 견해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가 세법상 어떤 규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가설은 기업측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세법일수록 가능한 기업의 회계규범을 존중하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기업이익은 과세소득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을 별도로 조정 계산할 필요가 없게 된다.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독립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상호관계가 없다는 견해로서 완전동일설과는 정반대의 견해다. 즉, 기업회계는 기업회계로서 세무회계는 세무회계로서 양회계간의 아무런 관계없이 각각 독립적인 계산규정이나 계산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견해다.

따라서 세법은 과세소득의 계산에 관한 대부분의 계산규정을 그 규범적 법체계에 포함시키고 기업회계의 이론은 민법이나 상법상 계산이론과도 전

8) 한세한, 영남대경영대학원석사학위 논문, 1997. 6

혀 무관한 독립적 이론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극단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한다면 기업은 기업회계장부와 세무회계장부를 별도로 작성하되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정리하여 세무당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할 것이다.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존성

세무회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업회계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의존의 정도에 따라서 절대적 의존관계설과 상대적 의존관계설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 의존관계설이란 세무회계의 목적인 과세소득의 계산은 기업회계의 목적인 기업이익의 계산방식에 절대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기업회계의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이 원칙에 따르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실천과는 전면적으로 일치시키되 다만 조세정책적인 견지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조세목적의 견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산정된 소득이 과세원칙으로 인정되어질 것을 요청한다. 현행 우리 나라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의 계산원리 및 측정의 기초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기업이익을 산출한 것을 세무회계의 목적에 일치되도록 차이를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 독립 또는 동일한 관계라고 볼 수 없고 상호 의존·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보완관계는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상대적 의존관계설이다.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의존형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대한 세무회계의 의존관계는 기업회계기준의 승계, 수정, 보완, 강조, 창설, 선택, 특설, 배제 등으로 분류된다. 이는 상호의존관계설에 의할 경우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양 회계의 차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⁹⁾ 현실적으로 세무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기업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세무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상호의존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승 계

기업회계기준에 있는 원칙을 세무회계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규정에서는 세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존중의 예로서는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인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2) 수 정

세무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세법의 정책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세소득 계산시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회계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회계기준상 잉여금의 개념과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개념이 다른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잉여금의 거래가 수익으로 처리되지 않는 반면 세법에서는 이를 익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김익래·최춘식·김종국, 「세무회계실무」, 한국세무경영사, 1998, p.37~39

3) 보 완

기업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기준에 탄력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무회계는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인정하면 조세 형평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 내지 보완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에서 감가상각방법을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¹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는 세무회계가 가지는 과세기술상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그 처리규정을 명확·간편하게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4) 강 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인정하나, 세무회계에서는 이를 보다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는 계속성의 원칙은 기업회계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나 세무회계에서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법은 계속성의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속성은 과세소득의 자의적 조정을 위한 입법적 규제사항에 해당된다.

5) 창 설

기업회계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을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창설규정은 기업회계에서도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설과 다르다. 창설의 예로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들 수 있다.

10)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연수합계법, 연금법, 상각기금법, 채고법, 갱신법, 폐기법, 종합상각법 등

6) 선택

회계확장 견해의 대립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 세법에서는 이러한 방법 중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와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규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7) 특 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세법상 독자적인 원리와 목적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한 것을 특설이라 한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특설은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한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한 과세이연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업회계에서는 이러한 준비금의 설정은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8) 배 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널리 인정된 회계처리방법이나, 세무회계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거나 기업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배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에서 인정되는 보수주의 원칙을 세무회계에서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 4 절 기업회계의 손익계산

1. 기업회계상의 이익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이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

기업의 수익은 기업의 생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¹⁾ 수익은 일정기간 동안 재화의 생산, 공급, 용역의 제공, 기타 실체의 중요한 중심적 활동으로부터, 한 실체로의 자산의 유입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변제를 말한다. 즉, 수익은 일정기간 동안에 기업이 산출한 재화나 용역으로서 고객에게 인도한 가격의 총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용은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재화나 용역의 사용 또는 소비를 말한다. 이 비용의 인식은 기업으로부터 자산이 분리되어 유출되는 때에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 비용에 손실¹²⁾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회계학자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비용과 손실은 다 같이 소멸원가로서 정의하고, 비용만이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손실은 원가가 소멸된 것이긴 하지만, 이는 수익산출활동에는 공헌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하는 것은 비용을 인식하는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을 손익계산서 작성의 요소로서 매출액,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의 세 가지 항목을 구분하고, 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법인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¹³⁾

2.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기업회계기준 제40조 1항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

11)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5

12) 이정호, 전제서, p.181 : 손실(loss)이란 회계학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당기순이익(net profit)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손실(loss)이다. 둘째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이 나타나는 불리한 사건(unfavorable event)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보통 이상적 손실(extraordinary loss)이란 말을 사용한다.

13) 기업회계기준 제3장 손익계산서, 제39조~제59조. 1997. 12. 31 작성기준일

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규정하여,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회계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발생주의(accrual basis)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사실로 인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실현주의와 대응된다. 이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경제적 사건의 영향은 실제 현금의 수입과 지출할 때보다 그것이 발생된 기간에 인식되고 보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해 연도에 발생하여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비용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금 기타 등가물의 지출이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도 그 액수가 측정이 가능하면 모두 손익계산에 산입하는 한편, 수익도 그 연도에 귀속되거나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만 있다면 현금·기타의 등가물의 수입과는 관계없이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미실현이익이 손익계산에 포함되어 기업의 재무구조기반을 취약하게 할 염려가 있다.¹⁴⁾

2) 실현주의(realization basis)

실현주의는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행해져서 대금의 회수가 합리적으로 보증되거나 화폐자산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준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출액은 상품 등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용역의 매출액 및 공사기간 또는 제조기간이 장기인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¹⁵⁾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위탁매출은 수탁자가 위탁품

14) 김기룡, 전계논문, p.22

15) 기업회계기준 제42조 1항

을 판매한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하며, 시용 매출액은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16)로 규정되어 있다.

3) 수익·비용의 대응원칙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재산법은 기초와 기말의 자산·부채를 실제로 조사하여 각각의 순재산액을 계산·비교하여 손익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의 손익계산이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며, 손익의 발생원인을 명백히 알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손익법은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발생원천별로 기록한 후, 회계기말에 이를 수정기입하여 기간손익과 이에 대응하는 기간비용을 확정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비교함으로써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때 수익에서 차감되어야 할 비용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헌한 것이어야 한다. 수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수치를 비교하여 얻은 결과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경영활동에 따라 나타나는 비용과 수익의 흐름으로부터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상호 관련 있는 비용과 수익을 한정하여 이들을 서로 합리적으로 대응시키게 된다. 이것을 비용·수익의 대응(matching costs with revenues)이라고 한다.¹⁷⁾

오늘날, 기간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수익·비용의 대응은 간접 혹은 기간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가의 소멸이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질 수 있는 몇가지 직접원가만이 예외적으로 직접 대응된다. 직접 대응방법에 따르면 원가는 제품원가와 판매수수료등과 같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¹⁸⁾

16) 기업회계기준 제42조 2항

17) 李正浩, 전계서, p.197

18) 조성하·이방원, 재무회계, 무역경영사, 1992. p.148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보면,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순손익의 계산

기업회계의 순손익계산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1) 재산법

기초 및 기말의 순재산을 비교하여 당기순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재산법 또는 자본유지접근법(capital maintenance approach)이라 부른다. 순이익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기초자본의 증가분이므로 기중에 기업주 또는 소유주가 추가로 출자(증자)한다든지 또는 이와는 반대로 자본을 인출(감자)하는 재무활동의 결과로 나타나 기초자본의 증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순이익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재산법에 의한 순손익은 총액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순손익이 어떤 원천에 의해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세한 과정 및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손익법

순손익은 일정기간의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 즉,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순이익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 순손실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수익과 비용과의 차액으로 순손익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손익법 또는 거래접근법(transaction approach)이라 부른다. 순손익을 수익과 비용의 차액으로 구하는 손익법은 순손익의 발생원인을 명백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 5 절 세무회계의 손익계산

1. 조세 및 조세법의 원칙

1) 조세의 개념과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가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반대급부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말한다.

국가는 국정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당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징수과정에서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조세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조세법은 조세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방법·기술 등이 법률을 말하며, 세법 고유의 기초원칙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국가의 조세는 법률의 근거없이 부과·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나. 조세평등주의

조세부담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해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내용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있다.

19) 崔明根, 「세법학총론」, 세경사, 1999, pp.16~127

다. 신의성실의 원칙

사람이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상대방의 신뢰를 잃지 아니하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의무이행이나 직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5조)

2) 세무회계원칙

세무회계의 양적 내용을 좌우하는 세법은 납세자보다는 과세권자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기초로 세무계산, 즉 과세수익의 계산, 과세소득의 계산,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제 기준인 구체적 행동규범 또는 행동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⁰⁾



가. 실질과세원칙

납세자의 실질적 담세력에 따라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과세소득의 귀속자의 결정 및 과세소득의 개념구성 또는 측정에서 있어서 표면적 사실에서 구하지 말고 과세요건 사실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행하여야 할 것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이는 세무회계에 있어 조세부담공평의 공준을 기초적 전제로 하고 조세부담능력의 공준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세무회계원칙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칙 등으로 성립된다.

(1)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귀속의 실질)

실질소득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법률상 귀속한다고 보게 되는 자가 단순히 명의인 일지라도 그 소득을 향수하지 않고 그 자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과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

20) 李相穆, 會計學講義, 現代稅務法人出版部, 1982, pp .351~366 요약

는 원칙이다.

(2) 소득실질과약의 원칙(내용의 성질)

소득실질과약의 원칙은 표상으로서 형식이 대상의 경제적 실질과는 거리가 있을 때 표면적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그 과세요건사실의 경제적 실질에 따르고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결과를 중시하여 개념구성 및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있다고 하는 원칙이다.

(3) 조세회피부인의 원칙

납세자가 통상적으로 보게되는 법 형식 내지 거래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이와는 다른 법 형식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 통상의 법 형식을 선택한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면서 통상의 법 형식 내지 거래형식에 결합하고 있는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거래를 부인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통상의 법 형식 내지 거래형식을 전제로 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고 과세소득의 개념 구성 및 측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하는 원칙이다.

나. 계산자의배제의 원칙

과세소득의 개념 구성 및 측정에 있어 납세자간에 있어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별납세자의 과도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에 의한 자의적인 계산을 배제하고 계산의 적정성의 확보를 요청하는 원칙이다. 이는 납세자간 과세소득 계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회계에서 인정하는 회계방법을 변경하는 등 특정 제약을 가함으로써 과세소득을 측정함에 있어 기업의 자의적인 회계방법의 개입을 배제하게 하는 원칙으로 세무회계에 있어 조세부담공평의 공준을 기본적 전제로서 형성되는 원칙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성립된다.

(1) 계속성 강조의 원칙

납세자간에 조세부담 공평성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과세소득의 결정에 몇 가지의 선택적용이 허용되고 있는 회계처리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하여는 그 기간적인 계속적 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계속성의 원칙의 변경을 허용하는 조건에 대하여 기업회계에 있어 보다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혹은 변경을 허용하는 조건을 허용함으로써 회계방법의 계속적 적용을 강조하고 회계방법의 변경조건을 강화시키는 원칙이다.

(2) 시종일관성 강조의 원칙

과세소득의 결정에 자의적인 계산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하나의 회계방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재고자산 평가방법)

(3) 중요성 판단억제의 원칙

과세소득 계산에 계산경제성의 배려에서 도입되어 있는 중요성의 원칙의 실제적 운영을 개별납세자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으로 흐르는 것을 억제하고 그 판단의 근거를 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계산의 개입을 배제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다. 손금계상규제의 원칙

사업경비로서 공제될 수 있는 손금허용의 요건을 규제함과 동시에 공제될 수 있는 공제허용손금에 대하여 손금허용한도액 및 총당금허용액을 규제하고 계산의 적정성의 확보를 요청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1) 사업경비손금 공제요건의 원칙, (2) 손금용인액 규제의 원칙, (3) 총당금 손금설정액 규제의 원칙을 두고 있다.

(1) 사업경비손금 공제요건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납세자간에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소득의 과액을 도모하기 위해 공제할 수 있는 영업상 또는 사업상이 손금 내지 필요경비로서의 공제용인에 대한 인정요건을 형성하여 사업경비의 손금공제에 관한 일반적 인정기준을 형성함으로써 사업경비의 손금용인성이 허용하는 요건을 규제하는 원칙이다.

(2) 손금용인액 규제의 원칙

손금 내지 필요경비로서 공제하게 되는 손금용인액의 기간적 계상의 최고 한도액을 규제하고 손금구성요소로서 계상하게 되는 용인액의 한도를 규제하는 원칙이다.

(3)충당금 설정액 규제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스스로의 손금계상에 따라 설정이 허용된 손금 허용충당금 항목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설정이 허용되는 손금허용의 준비금 항목에 대한 요소로서 계상하게 되는 설정액의 최고한도액을 규제하고 손금설정 한계를 규제하는 원칙이다.

라. 부담능력주의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납세자의 담세력 내지 부담력을 표시하는 조세 부담능력에 따라 납세에 적절한 상태의 적정한 소득을 과액하게 되는 것으로 소득의 발생원인과 실태 그 성격이나 형성의 양상 및 자본적인 확인등을 고려하여 조세지급능력 및 조세부담력을 배려하게 하는 원칙이다. 이에 는 세무회계의 조세부담능력의 공준을 기초적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원칙으로 조세지급능력 배려의 원칙, 조세부담력 배려의 원칙을 개별원칙으로 한다.

(1) 조세지급능력 배려의 원칙

조세지급능력 배려는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납세수단인 자금면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자금적 확인이 되는 소득을 과세의 기준 소득으로 파악하게 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납세자금면을 배려하는 것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2) 조세부담력 배려의 원칙

조세부담력 배려는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소득발생의 실태와 소득형성의 양상에 대응하며 조세부담력을 배려하고 납세에 적절한 상태에 있는 소득을 파악하게 되는 것을 요청하는 원칙이다. 이는 소득의 발생원인이나 실태·성격이나 형성의 양상등을 고려하여 조세의 부담력을 배려하는 원칙이며 기간적 소득가득의 패턴(pattern)의 변동성에 대처하는 배려로서 특정의 기간적인 과세연도를 초월하여 이월결손금을 3년 내지 5년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나 자산에 대하여 재해에 의한 현저한 손상 기타 특정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평가손의 계상을 허용하는 것 등에서 보게 된다.

조세목적에 있어서는 조세부담 공평성의 요청의 입장에서 과세소득의 기간적 측정의 엄정성을 보유하면서도 순 사업손실의 발생에 의한 기업자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전한 후에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에 배려되어 있다.

마. 자본배제 과세제외의 원칙

과세소득이 구성 및 측정에 있어 자본 및 잉여를 분리 구별하여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소득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자본잉여금 항목을 과세되지 않게 하는 잉여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청하고, 자본잉여금 부과 항목은 비공제로 하게 되는 원칙으로서, 이는 조세부담능력의 공준 및 납세주체설정의 공준을 기초적 전제로 형성된 원칙이다.

(1) 자본잉여 과세제외의 원칙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자본잉여의 적극항목 즉, 자본잉여의 증가항목을 포함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분리 제외하게 되는 것이라는 원칙이다.(감자차익, 합병차익, 주식발행초과금 등)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서는 특정의 과세연도에 측정되고 경제적 가치의 순증가분인 순자산의 증가액에서 세무상의 자본 등 거래에 따라 초래된 경제적 가치의 순증가분은 제외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자본잉여부과불공제의 원칙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자본잉여의 소극적 항목 즉, 자본잉여의 감소항목은 손금공제 항목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며 불공제 항목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는 원칙이다.(주식할인발행차금의 손금불산입 등) 다시 말하면,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서 특정의 과세연도에 측정된 경제적 가치의 순감소분인 순자산의 감소액에서 세무상의 자본 등 거래에 따라 경제적 가치의 순감소분인 순자산의 감소액에서 세무상의 자본 등 거래에 따라 경제적 가치의 순감소분은 공제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바. 계산기준 명확성의 원칙

과세소득의 개념 구성 및 측정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행정상의 용이성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별납세자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조세부담의 능력성을 강조하면서도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가능한 계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실인정에 관하여 납세자인 국민과 조세행정부인 조세행정기관과 판단에 있어 상위의 기재를 가능한 회피하고 기업의 회계실천상의 편의와 세무행정상의 용이성 내지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산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채무회계의 손익계산의 기준은 당해 기업의 개별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주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바 세무회계에 있어서는 미리 명확한 계산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을 측정하게 하고 있다.

이 원칙은 객관적 거래에 대한 손익의 기간적 인식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특정의 견적경비의 손금허용액에 대한 기간한정을 형성하고, 특정사실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하는 것으로 계산기준을 명확하고 계산절차의 번잡화를 피하고자 하는 원칙으로 조세운영배려의 공준을 기초적 전제로 형성되는 세무회계원칙이며,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이 있다.

(1) 권리의무확정의 원칙

세무회계상의 권리의무확정의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인 권리의 형성 및 채무확정의 사실에 손익 기간한정의 기초적 계기를 구함으로서 계산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2) 형식기준 적용의 원칙

세무회계상의 형식기준적용의 원칙은 개별적 실태적인 관계를 기초로 하여 손금액의 기간한정을 이루는 계산방식의 대위로서 법령에 따라 정한 획일적 기준자산의 장부가액 등에 대한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등과 같은 형식기준에 의한 일정의 비율에 따라 특정의 견적경비의 손금허용액등에 대한 기간 한정을 이루는 것에 따라 계산기준의 명확화를 도모하여 조세운영을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3) 특정사실기준적용의 원칙

세무회계상의 특정사실기준적용의 원칙은 개별납세자인 기업에 있어 당해 비용에 대한 과거의 지출실적 또는 당해 비용의 장래에 있어 지출사실의 근거가 되는 계약적인 계산규제 등과 같은 특정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손금액으로서의 부담액은 측정기준에 따라 특정견적경비의 손금허용액에 대한 기간한정을 이루는 것에 따라 계산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하여 이를 조세운영에 배려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사. 계산간편성의 원칙

과세소득의 개념구성 및 측정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배려한다고 하는 조세운영의 이념과 조세행정상의 용이성을 고려하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부담능력성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납세자에게 소득계산의 기술적인 수속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끔 계산경제성을 배려하고 또는 계산의 탄력화를 배려하여 가급적으로 간편화를 기하는 것을 요청하는 원칙으로 조세운영배려의 공준을 기초적 전제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다음의 원칙으로 구성한다.

(1) 계산경제성 배려 원칙

세무회계상의 계산경제성 배려 원칙은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계산간편성의 견지에서 납세자에 있어 소득계산의 기술적인 수속을 복잡하게 하고 이 때문에 납세사무의 코스트(cost)가 증대되지 않도록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부담능력성을 확보하는 것과 조화를 도모하면서 계산의 경제성을 배려하게 하는 원칙이다.

(2) 계산탄력성 배려의 원칙

세무회계상의 계산탄력성 배려의 원칙은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계산간편성의 견지에서 납세자에 있어 소득계산의 기술적인 절차를 복잡화하여 계산의 곤란성을 초래하는 것이 없게끔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부담능력성을 확보하는 것과의 조화를 도모하면서도 계산의 탄력성을 배려하게 되는 원칙이다.

아. 기업자주계산주의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회계연도 의존의 견지에서 조세목적의 회계이념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의 기장 및 결산·재무제표의 작성방법·내용체계 등에 규제를 가할 필요 없으며,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보며 과세소득의 결정을 위하여 그 범위에 있어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차의 선택적용을 허용하여 기업의 개별적 사정에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방법의 채택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기업경리의 자주성을 인정하며, 선택적용의 여지가 허용되어지는 회계적 사실에 대하여는 기업의 확정결산을 통한 기재액을 기초로 하여 소득계산을 요구하며, 과세소득이 측정을 위한 기능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세무회계의 보고회계적 분야에 대해 독자의 시스템으로서 세무재무제표 제도의 독자성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기업의 자주적 경리의 존중을 전제로 하는 원칙이다.

세무회계에 있어 기업자주계산주의의 원칙은 과세소득은 세무회계에 따라 산출된 기업이익을 기초로 하고 조세목적의 이념에 적응한 세법특유의 세무회계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바, 계산과정에 기업경리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무회계의 회계제도 의존의 공준을 기초적 전제로 하여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다음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업경리 불구속의 원칙

과세소득 측정에 있어 세무회계 규정은 조세목적의 회계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회계의 기장 및 재무제표의 작성방법·내용체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나 적극적인 간섭을 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2) 회계방법 선택적용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에 기업의 개별적 사정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특정의 범위에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차의 선택적용을 허용하고 회계방법의 채택에

탄력성을 부여하며 기업경리에 자주성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3) 확정결산 기준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은 확정결산을 기준으로 하며, 회계처리의 기준 및 절차의 선택에 대하여 선택적용의 여지가 허용되어 있는 회계적 사실에 대하여는 기업의 최종적인 의사표시가 납세신고서상이 아니며 상법상의 결산인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출자사원의 총회의 동의를 얻은 확정된 결산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며 확정결산의 기재액을 기초로 하여 소득계산이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4) 세무재무제표 독립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은 세무회계독립의 손익항목의 산정에 기업의 공표재무제표제도의 보고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피하게 함과 동시에 과세소득의 결정을 위한 기능을 정확히 하기 위한 세무회계의 보고회계적 측면에 독자적 시스템으로서 세무재무제도의 창설과 그 독자성을 요구하게 되는 원칙이다. 세무재무제표는 기업의 기본재무제표인 상법상의 계산서류를 기초로 하여 이에 상법 독자의 계산규정에 기준하여 수정을 시행하는 것에 따라 유도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다.

자. 공공정책배려의 원칙

과세소득의 개념구성과 측정에 있어 조세가 갖는 경제적 기능 및 사회적 기능의 견지에서 경제적 배려 및 사회적배려가 되어, 공공정책 배려의 사고가 정책목적의 합리성·정책수단의 유효성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폐해를 초월하는 정책효과가 합리적인 논거하여 개입된다는 원칙이다.

과세소득의 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정책이 배려되며, 또한 사회정책이 배려된다. 이와 같은 조세에 경제적 배려 및 사회적 배려는 공공정책의 배려이며, 세무회계상의 공공정책배려의 원칙은 세무회계가 위치하고 있는 환경조

건 또는 사정에서 초래되는 세무회계 공준인 공공정책 배려의 공준을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는 세무회계 원칙이다.

(1) 경제정책배려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에 조세의 경제적 기능의 견지에서 경제적 배려가 되어 국민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특정의 행위에의 유인조치로서 또는 국민 경제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에 대한 억제 조치로서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사회정책배려의 원칙

과세소득의 측정에 있어 조세의 사회적 기능의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가 되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정의 행위에의 유인조치로서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의 억제조치로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조세특례제한법, 미등기 양도증과 등)

2. 과세소득의 의의

과세소득은 일정기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순증가액으로 화폐단위로 측정·인식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과세소득은 기업회계상의 순이익에 대응되지만, 조세의 부과를 위해 계산되는 것으로서, 기업회계의 순이익과는 계산이론이 다르므로 그 계산결과는 다르다.

과세소득의 기본적 개념과 본질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 1) 기간적 개념의 화폐적 측정치로서의 소득개념
- 2) 모든 원천으로부터 경제력 순증가액으로서의 소득개념
- 3) 순실현증가액으로서의 소득개념

21) 富岡幸雄, 「稅務會計總論」 (東京: 森山書店), 1983, pp.61~71.

- 4) 순소득개념의 순증가액으로서의 소득개념
- 5) 자본의 추가적 출자 또는 인출·잉여금의 처분을 배제한 소득개념
- 6)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기준으로서의 소득개념
- 7) 조세부담능력의 지표로서의 소득개념
- 8) 조세운영을 배려한 소득개념
- 9) 회계제도에 의존하는 소득개념
- 10) 납세주체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소득개념
- 11) 공공정책을 배려한 소득개념

제 3 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분석

제 1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의 발생원인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라고 할 때에는 재무회계를 지칭하며, 세무회계라고 할 때는 법인세회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라고 하면 재무회계의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회계의 각 사업연도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법인의 일정기간 경영성적을 나타내는 순이익의 계산은 통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계산하는 반면 세무회계의 과세소득은 공평과세실현 등 세무회계가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기업회계상 순이익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자산·부채의 평가, 손익귀속시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1)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는 특정 경제활동에 대한 일종의 국가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가 큰 정책과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각종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이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표적인 법률이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 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

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 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②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③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 ④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⑥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⑦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⑧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⑨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⑩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⑪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 ⑫ 지방세에 대한 조세특례
- 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 ⑭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및 조세특례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조세특례나 혹은 특례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세법에서는 정책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2) 사회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세법에서는 본래의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한 비용항목이라도 사회적
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이나, 소비성경비,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부담하는 벌금 등은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손금성을
부인한다.

기부금·접대비 등의 한도초과액, 벌금·과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의
손금불산입이 그 예이다.

2. 손익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
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
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서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및 수익의 실현을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기본원칙으로 “내
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²²⁾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손익을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로 귀속한 것은 익금
의 경우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날 그리고 손금의 경우 지급할 채무(의무)가
확정된 날로 손익을 귀속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를 다른 말로 표현
하면 ‘권리의무확정주의’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는 거래형태별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
연도의 기본원리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거래형태별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이들 모두가 ‘권리의무확정주의’

22)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는 세법에서 규정한 일종의 법정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한다.²³⁾

손익인식에 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인식기준에 의한 차이를 요약하면 <표3-1>와 같다.

<표 3-1> 손익의 인식기준에 따른 양 회계의 차이

항 목		기 업 회 계	세 무 회 계
기부금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입 이자	일반 법인	발생주의	세법이 정한 수입시기(만기일·해약일) *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 예외
	금융기 관	발생주의	현금회수기준(선수이자 제외) * 선수수익을 계상한 경우 예외
감가상각비		발생주의	당해연도 손금산입범위내에서만 손금산입 가능 * 전년도 과소계상액을 당기에 추가설정 불가
채 충당금		발생주의 * 수선충당금, 판매보증 충당금, 공사보증충 당금 등 설정가능	채무확정주의 * 세법에서 열거한 것만 손비 인정

3.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기업이 유지해야 할 자본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이와 같

23) 신찬수·정창모, 법인세의 실무, 삼일세무정보, 1999, p.593~594

이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세법은 주주의 출자자본만을 자본으로 보고 기타 자본잉여금은 익금으로 보고 있다. 즉,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자본의 개념에 따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항 목	기 업 회 계	세 무 회 계
국고보조금	◇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	익금산입(법법§11(5)) 단, 고정자산의 취득·개량에 지출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 산입가능 (세금의 이연효과, 법법§36①)
공사부담금	-처분시 잔액 :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기(기준§71)	익금산입(법법 §11(5)) 단, 전기·가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요된 공사금액을 일시 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세금의 이연효과, 법법§37①)
보험차익	특별이익	익금산입(법법 §11(5)) 단, 고정자산의 대체취득·개량에 지출한 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가 능(세금의 이연효과, 법법§38①)
자산수증이익	특별이익	익금산입(법법§11(5))
채무면제이익	특별이익	익금산입(법법§11(6))

<표 3-2> 자본의 개념에 따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항 목	기 업 회 계	세 무 회 계
자산의 평가차익 ①재평가차익	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	· 건물등(3%) : 익금불산입 · 토지(1%) : 익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후 양도시 익금산입(과세이연, 재법§33①)
②보험업등에 의한 평가차익	· 투자자산 성격:자본조정 · 상품, 유가증권, 재고자산 : 당기손익 · 고정자산: 감액손실(당기손 익)	익금산입(보험업법§97) * 평가차손: 손금불산입
③합병평가차익	부의 영업권 · 당기손익	익금산입(법법§17(3)단서) 단,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 당금으로 손금산입가능(세금의 이연효과, 법법§44①)
④분할평가차익	· 정액법 환입 · 특별이익 · 무형자산의 차감 항목	익금산입(법법17(4)) 단,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 당금으로 손금산입가능(세금의 이연효과, 법법§44)
합병차익		익금불산입(법법§17)
감자차익, 분할차 익	자본잉여금	익금불산입(법법§17)
잉여금의 자본전 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음 * 주식의 분할(기준§31)	익금산입(법법§16①(2)) 단,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 의 자본전입은 익금불산입

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차이

기업회계는 도덕적 윤리성이나 계산의 정당성보다는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사실의 결과를 토대로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회계처리에 임의성을 가진다.

반면 세무회계는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의하여 적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적인 강제성을 가진다.

즉, 조세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조세의 부당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와는 달리 강제적 규정으로 되어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비교하면 <표 3-3>와 같다.

<표 3-3>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양 회계의 차이

항 목	기업회계	세 무 회 계
부당행위계산	수익이 아님	주주·출자자 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 부당한 행위·계산 부인액 익금산입(법법§52)
가지급금 등에 대 인정이자	수익이 아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저율 금전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법령§89)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수익이 아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 금에 대한 간주익금(조특법§138)
제세공과금	비용	법정공과금 외는 손금불산입(법법§21)
기부금	비용	세법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법법§22)
접대비	비용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법법§25)
과다경비	비용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법법§26)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경비	비용	손금불산입(법법§27)
지배주주인 임원의 보수	비용	지배주주이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손금불산입(법령§43)

제 2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발생 형태 및 세무조정 현황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의 형태

기업회계상의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차이가 나게 되지만 양 회계는 전혀 독자적인 계산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기업회계를 기초로 하여 양자의 차이에 따라 가감항목이 추가로 조정됨으로서 계산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세무조정의 결과가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가서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미래기간 법인세 영향 유무에 따라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로 나눌 수 있다.

1)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

영구적 차이란 어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기업이익의 차이가 세법에 의해 차기 이후의 기간에도 상쇄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소득과 기업이익의 차이를 말한다.

영구적 차이는 조세정책 및 경제정책의 목적에 의하여 세법에서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개념과 시각을 달리함으로서 세무회계상으로는 익금과 손금이 되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영구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차이의 발생연도에 종결되고 차기 이후에 회복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 회계의 차이 중에 미래에 가서 그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영구적 차이에 속하는 것은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구적 차이에 속하는 것은 기업이익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²⁴⁾ 등과 기업이익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에는 포함되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등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항목 등이 있다.

2)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

어느 특정의 결산기에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여도 복수의 결산기를 통하여 그 차이에 대한 가산과 감산이 서로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는 소멸하는 차이를 귀속시기의 차이(timing difference) 또는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간차이와 일시적 차이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즉, 기간차이가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인식시기의 차이만을 지칭하지만 일시적 차이는 기업이익과 인식시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상의 자산, 부채금액의 평가차이(미래의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와 이월소득공제, 이월세액공제,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공제 등과 같이 미래의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차이 보다 일시적 차이가 보다 광의의 의미가 된다.

일시적 차이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세무회계상으로는 귀속시기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한 차이지만 차기 이후에 회복되거나 소멸되어 차이가 해소되는 항목으로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된다.

일시적 차이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용인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발생연도에 손

24)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아니지만 법인세의 공제나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어 납부할 법인세액이 감소되므로 영구적차이항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월세액공제는 이월소득공제와 더불어 일시적차이 항목으로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된다.

금불산입되고 차기 이후에는 손금가산되는 항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과 같이 기업회계에서는 비용항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조세정책적으로 손금산입되는 항목, 금융자산에 대한 수입이자와 같이 기업회계상 기간경과분을 미수이자로서 수익계상하지만 세무회계상 만기일이나 해약일에 수익실현으로 보아 익금불산입되는 항목 등이 있다.

일시적 차이의 유형에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차기 이후 회계연도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느냐 가산시키느냐에 따라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구분한다. 이것에 대한 내용과 예시적인 항목들은 <표 3-4>와 같다.²⁵⁾

<표 3-4>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

유 형	내 용	항 목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차 (자산)]	과세소득이 익금가산(손금불산입)된 항목으로 일시적차이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손금가산(익금불산입)된다.	외화평가차익 과소계상액 외화평가차손 과대계상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단체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대 (부채)]	과세소득이 손금가산(익금불산입)된 항목으로 일시적차이가 해소되는 시점에 익금가산(손금불산입)된다.	외화평가차익 과대계상액 외화평가차손 과소계상액 세무조정에 의한 각종준비금 손금산입액 재고자산평가증(세무회계기준으로 재고자산의 평가가 과대평가된 금액)

25) 황갑성, 「이연법인세회계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24~25.

2. 기업의 세무조정 현황 분석

기업의 세무조정 현황을 분석한 세무조정자료는 1999년도 12월 결산법인인 407개 업체(표본)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선정 요건은 ①결산일을 일치시킴으로서 분석대상 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②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선정함으로서 일반기업과의 세법규정의 상이한 부분을 고려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였다.

여기서는 표본기업들의 세무조정개수의 기술통계량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의 세무조정 항목의 기술 통계량 등을 분석하여 보았다.

1) 세무조정개수의 기술통계량

<표3-5> 세무조정개수의 기술통계량(단위 : 개)

구분	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시적차이 가산	407	1	22	7.3439	3.2505
일시적차이 차감	407	0	23	6.4004	2.2989
영구적차이 가산	407	0	13	4.2001	2.9233
영구적차이 차감	407	0	9	1.6781	1.5190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시적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개수는 가산조정이 약 7.3개, 차감조정이 약 6.4개로서 가산하는 조정개수가 평균 1개정도 많으며, 영구적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개수는 가산조정이 약 4.2개 차감조정이 약 1.7개로서 가산하는 조정개수가 평균2개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세무조정개수로만 보면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세무조정개수가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세무조정 개수 보다 다소 많음을 알 수 있다.

2)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의 기술통계량

다음은 일시적차이 세무조정항목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3-6> 일시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의 기술통계량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감가상각비	158	4,113,975	14,365,788	건설자금이자	27	58,182,483	279,877,769
기술개발준비금	133	6,767,114	43,511,644	감가상각비	137	1,012,005	2,724,505
대손충당금	284	22,624,952	176,088,466	기술개발준비금	88	4,576,227	8,637,275
미수수익	297	10,788,566	147,323,495	단체퇴직급여충당금	27	13,734,741	59,611,644
수출손실준비금	95	3,039,523	24,320,705	단체퇴직보험료	41	3,879,148	7,657,531
유가증권평가손익	129	1,244,338	3,255,600	대손충당금	261	25,734,920	218,216,039
일시상각충당금	20	786,206	2,045,008	미수수익	294	5,843,797	76,297,925
외화환산손익	79	1,212,273	2,522,647	유가증권평가손익	124	1,751,896	5,417,727
재고자산평가손익	71	2,712,188	10,547,449	외화환산손익	78	3,947,829	13,594,082
중소기업투자적립금	42	276,158	362,667	재고자산평가손익	51	5,861,551	27,998,275
지분법평가손익	91	27,012,502	155,538,482	중소기업투자적립금	25	510,943	392,714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48	59,170,178	377,314,236	지분법평가손익	136	13,625,791	35,217,014
퇴직급여충당금	210	16,528,585	150,114,122	현재가치할인차금	52	21,345,208	61,806,313
하자보수충당금	32	2,619,193	3,277,143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90	14,065,240	44,293,517
해외시장개척준비금	98	1,795,531	12,090,203	퇴직급여충당금	104	9,876,791	74,350,073
해외투자손실준비금	53	1,190,836	17,091,639	하자보수충당금	23	2,389,618	3,358,336
환율조정대	53	9,387,227	39,177,762	환율조정대	19	2,682,445	4,940,043
환율조정차	88	3,140,369	69,635,597	환율조정차	128	8,852,544	32,375,684
일시적차이 자산 총계	407	73,002,123	576,550,208	일시적차이 차감 총계	407	113,176,334	1,324,928,531

<표 3-6>에서 일시적 차이 가산항목 중 빈도수가 높은 조정항목으로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미수수익, 유가증권평가손익, 퇴직급여충당금 등으

로 나타났다. 일시적 차이 차감항목 중 빈도수가 높은 조정항목으로는 가산항목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일시적 차이 가산의 조정항목의 빈도수가 높은 특정항목은 차감의 조정항목의 빈도수도 높음을 알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항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연불매매거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 기업회계에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세법에서 이를 부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빈도수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3) 영구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의 기술 통계량

다음은 영구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3-7> 영구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의 기술통계량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가지급금인정이자	50	657,317	1,727,999	법인세비용환급	65	2,530,886	17,765,570
감가상각방법변경효과	50	1,457,711	2,893,508	수입배당금	54	48,766	79,673
기부금	66	195,498	1,022,470	이월이익잉여금	34	14,977,419	40,100,113
기밀비한도초과액	25	115,927	439,319	자기주식처분손실	17	4,992,620	8,175,030
법인세 추납액	193	4,880,237	45,741,162	전기오류수정손실	60	89,804,127	664,452,236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30	2,146,573	5,408,639	증서안정기금배당액	46	88,450	137,850
비지정기부금	20	1,179,582	3,042,143	지분법평가손익	31	9,239,098	22,141,055
세금공과	129	256,651	1,300,306	투자유가증권손익	23	10,250,768	19,411,271
이월이익잉여금	27	16,912,278	47,944,280	퇴직급여충당금	29	483,210	1,062,987
이자비용	24	3,045,945	5,537,414	환율조정차	64	3,404,995	6,517,909
인정이자	34	3,986,951	18,955,710	현재가치할인차금	14	3,664,336	5,004,994
자기주식처분이익	32	12,507,700	50,710,345				
잡손실	45	254,840	1,038,912				
전기오류수정이익	47	4,071,734	19,003,830				
접대비초과	305	1,154,722	6,760,553				
지급이자	128	2,360,562	8,411,708				
지분법평가손익	23	12,020,438	24,796,629				
투자유가증권평가충당	43	16,627,477	33,282,825				

위의 <표 3-7>에서는 <표 3-6>과 비교해 볼 때 영구적차이는 일시적 차이에 비해서 조정금액은 물론 발생빈도수도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구적 차이는 대체로 가산항목 및 금액이 차감항목 및 금액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영구적 차이 가산항목 중 빈도수가 높은 항목으로는 법인세 추납액, 세금공과, 접대비한도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표본기업 중 75%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평균 11억원 정도의 한도초과 금액이 발생하고 있어 기업의 접대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표본기업 중 32%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평균 23억원 정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고 있어 차입금을 비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3-7>에서 주목할 만한 항목은 법인세 추납 및 환급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인세 추납 및 환급이 세무조사 결과 및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산과정에서 계상한 당기말 미지급법인세와 실제로 납부한 당기 법인세부담액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세무조사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당기말 미지급법인세 계상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이익에 비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세무조정 개수 및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도적인 오류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과년도에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 4 장 양 회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이 조정방안

제 1 절 주요 국가의 양 회계의 관계 및 조정방안에 관한 논의

1. 미국의 경우

1) 양 회계의 관계

미국의 회계는 1930년 이전까지는 오랜 세월을 걸쳐 생성발전된 영국의 회계를 계승하였다. 1930년대 초 주식시장의 공황에 따라 1933년의 증권법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이 제정되고 회계원칙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때부터 미국회계학회(AAA)와 공인회계사협회(AIA 및 AICPA)가 주축으로 한 많은 개념적 연구와 회계원칙 그리고 기본적인 회계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미국회계학회의 회계원칙 형성을 위한 연구방법은 전반적 방법 내지 개념적 방법으로서 회계 및 보고실무의 개선과 회계실무의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짜임틀(framework)을 강화하도록 하였다.²⁶⁾ 이에 대해 AIA(후의 AICPA)의 회계원칙 형성방법은 단편적 방법 또는 사례적 방법으로서 실용적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 회계사를 직접 돕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의 회계는 회계의 통일과 재무제표공시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회계와 관련된 전문 단체들 즉 미국의 회계학회와 실무를 대표하는 미국공인회계사협회등이 균형된 연구와 노력으로 회계이론과 기법을 발전

26) 이정호, 1997, 전계서, 경문사, p.49~59

시켜 왔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회계에 대한 이론과 기법은 세법상의 회계규범으로 삼더라도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기업회계와 관련되는 최초의 세무회계규정은 1909년 법인면허법의 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동 면허세법은 현금주의를 택하였고 납세자들의 장부조작 및 회계관습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달라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1913년 소득세법의 개정시에는 회계사들이 참여하여 세무행정에 관여함으로써 세무회계의 제도적 확립을 가져오는 회계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어서 1918년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관계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세무회계의 출발은 1918년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규정을 둔 데서부터 시작된다.²⁷⁾

Sec. [446a] 「일반원칙 ; 과세소득은, 납세자가 자기의 장부에서 정규적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기초에 둔 회계방법에 따라서 산정되어야 한다.」

Sec. [446b] 「예외 ; 만일 납세자가 이용해 온 회계방법이 정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그 회계방법이 이익을 명료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과세소득의 계산은 재무장관이 이익을 명료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상기와 같이 미국의 세법에서는 기업회계에 관한 기준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동시에 예외적인 규정을 포괄적으로 둠으로서 세법 독자적인 계산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과세소득의 기초는 납세자가 정규로 채용하고 있는 회계실무를 중요시하고, 그 실무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방법에 기초를 둔 것이라면 납세자의 회계방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서 기본적으로 세법은 과세소득 산정을 회계실무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곧 세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세법이 과세소득의 산정의 기초에 GAAP회계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27) 이우택, 1998, 과세소득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p.83-87.

인정한 것이다. 또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통상 기업이 이용하는 회계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과세소득의 결정을 회계전문가에 위임한 것을 의미하고, 회계전문가 단체에 의하여 전개된 회계원칙 및 개념은 세무목적 및 재무제표목적의 이익결정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GAAP에 “따른다” (under the method of accounting)는 의미는 회계기준을 이용하되 그에 따른 문제점은 과세자 즉 세법의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그의 적정성 여부를 따로 평가하고 그 결과의 여하에 따라 기업회계를 존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를 그대로 준용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Sec. [446b] 에서 납세자가 ①정규적으로 계속 사용한 회계방법인지, ②계속 사용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계방법이 납세자의 이익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과세자의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에 의한 과세표준의 산정은 납세자의 몫이 아닌 과세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법인세신고서상에서 총소득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이것에 각종의 명세서와 세무조정 후의 대차대조표 등의 산출과정을 명확히 나타내는 세무정산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과세소득의 계산과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세법규정과 같은 의미의 확정결산기준의 적용사항은 한정적이다. 즉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극소수의 사항을 제외하고 대체로 신고조정이 인정되고, 특별상각에 대해서도 기업회계상의 처리 여하에 관계없이 신고조정이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세법이 과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의 회계처리를 구속하지 않는 것은 회사법자체가 주법이고, 각 주간에 통일적인 회사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정한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은 연방법으로서 세법상 특정사항에 대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의 결산에 구속되지 않는 점은 회계법

상의 계산규정이 다른 각 주간의 과세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미국형 회계제도에 있어서 「보고목적회계」와 「세목적회계」가 이분화되는 체계의 배경에는 틀림없는 법제도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²⁸⁾

2) 미국에서의 양 회계의 논의 동향

과세표준과 관련한 회계기준의 수용관계는 기업회계가 충분히 발전하여 있기 때문에 굳이 세법에서 중복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 없이 기업회계를 원칙적으로 존중한다고 하여 기업회계의 세무회계에 대한 기준성을 명확히 함으로서 기업회계원칙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업회계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거나 조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업회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세무회계의 독자성에 대하여도 세법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 결국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독자적인 기능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문제는 법인세효과회계라는 새로운 회계영역을 개발하여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2. 일본의 경우

1) 양 회계의 관계

일본은 독일과 같이 전형적인 대륙법계국가로서 회사의 회계처리는 당초부터 상법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독일처럼 상법회계가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이용되면서 세무회계에 대한 상법적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세무회계에 대한 다양한 계산이론과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한 판례들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상법상의 계산규정을 중심으로 회계

28) 武田隆二, 1996, 「確定決算主義と會計基準」, 기업회계, Vol.48 No.1, p.30

처리를 하여 오다가 전시의 비상체제하에서 재원조달과 전후 재해복구에 따른 조세정책이 법인세법에 대거 삽입되면서 세무회계가 독자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종래의 세무회계 우위의 체계에서 1966년과 1967년에 걸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회계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정시 기업의 회계를 중요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무회계가 주도하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경우와 같은 입법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상법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던 회계가 이제는 상법이 기업회계원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이어 세법에서도 기업회계원칙을 상당히 받아들임으로써 기업회계가 기업의 회계기준으로 위치를 자리잡게 되었다. 그후 1962년의 상법개정에서는 기업회계원칙을 대폭 수용하게 되었고 이때 실천규범으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기업회계원칙과 강행법규로서의 상법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1969년에는 「상법감사」와 「증권거래법감사」가 일원화됨에 따라 상법상의 계산규정과 기업회계원칙과의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게 대두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갑작스런 회계제도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충격을 흡수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와 관련된 각 단체들에서 회계이론이 정립되어 있었고 회계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새로운 회계제도가 상법 및 세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꾸준히 조정하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현재의 일본식 회계이론과 실무를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일본의 회계제도가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를 받아들여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실행되고 있다.

2) 일본에서의 양 회계의 논의 동향

(1) 확정결산주의의 재검토

최근 10 년간 확정결산주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확정결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세법의 「기장요건」 강제로 인한 기업회계의 왜곡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이는 독일에서도 역기준성의 문제라 하여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① 세법규정을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키는 방향, ② 세법규정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르고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신고조정 되는 것에 의해 「역기준성」 비판을 해소하는 방향, ③ 세법의 우대항목에 대해서 적립금 경리방식에 의한 조정을 인정하는 방향, ④ 세법상의 경리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는 방향 등이 상정되고 있다.



(2) 재무회계와 세법과의 분리경향

1998년도의 세제 개정은 전후 세제발족이래 최대의 개혁이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종래까지의 세법계산규정과 재무회계를 가능한 한 일치시키려는 방식으로부터, 양자의 목적이 다른 이상 세법과 재무회계와의 처리가 다른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되었던 것이다. 세제 자체의 논리를 전개하면, 「법인세율의 인하」와 「과세대상액의 확대」를 축으로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1986년의 미국의 세제개혁에서 시작된 「세율인하」와 「과세대상액의 확대」라고 말하는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과세대상액의 확대는 충당금의 축소·폐지, 정액법에 의한 건물감가상각, 장기공사에 대하여 공사진행기준등의 강제 등이다. 이 결과 세법 계산규정과 재무회계상 처리기준과의 차이는 충당금등에 있어서 증대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총급여의 40%에서 20%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세법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결과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재무회계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사이에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재무회계는 세계적으로 일원화되는 반면 세법은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양성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적 성격을 지닌 재무회계기준을 한나라 기반의 세법계산규정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자체로서 한계가 있다.

일본에 있어서 재무회계기준의 형성은 국내적인 세법과의 조정이 아니라 국제적기준에의 조화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손금경리방식에 의한 세제의 실질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신고조정이 용이한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²⁹⁾ 이것은 세법지향적인 재무회계기준에서 재무회계자체의 목적을 중시한 기준형성방식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결과 재무회계와 세법계산규정과의 괴리가 증가하여 세효과회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된다할 것이다.

3. 우리 나라의 경우

1) 양 회계의 관계

우리 나라의 양 회계의 관계는 결산확정주의라 할 수 있다. 결산확정주의란 상법상 확정된 결산을 바탕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조정하여 과생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는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세무회계가 기업회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행 과세소득계산방식은 독일과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국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세법규정에 따른 가감계산을

29) 中田信正, 1999, 稅効果會計入門, 中央經濟社, p.106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세무조정이라 한다. 이와 같은 가산계산과 차감계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조정의 본질은 기업회계의 내용에 관한 세법적 수정이라 말할 수 있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뉜다.

(1) 결산조정사항

법인세법은 결산조정사항에 관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법 23 ①). 즉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서상의 손비계상을 손금산입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³⁰⁾ 위에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 한다는 것은 장부상 해당 계정과목에 손비로 기재하고 당해 장부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결산을 확정한다는 의미이다. 결산조정사항에는 내부적 계산항목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선택항목이 포함된다.

① 내부적 계산항목

내부적 계산항목이란 감가상각비·대손금·충당금 및 준비금 등과 같이 외부와의 거래없이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손비의 계상여부 또는 계상할 손비의 크기가 결정되는 항목이다.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내부적 계산항목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액자본적 지출의 손금산입, 소액자산 및 어구 등의 손금산입,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생산설비의 폐기손실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충당금, 대손금의 손금산입, 파손된 재고자산 등의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손금산입,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등이다.

30) 김완석, 2000, 법인세법론, (주) 광교아카데미, p.113

②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선택항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법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할부판매에 있어서의 수익과 비용·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이자비용·금융보험업의 선수보험료·임대료·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물품대금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특례가 이에 해당한다.

(2) 신고조정사항

법인이 확정결산을 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조정을 신고조정이라고 한다.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은 예외없이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사항은 결산조정사항외의 사항만이 신고조정 사항이다.

손금산입사항은 내부적 계산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조정사항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손금항목 중 내부적 계산항목 이외의 것, 즉 외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3) 소득처분

소득처분이란 법인의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그 귀속을 가려서 그 소득자·소득의 종류·소득금액 및 소득의 귀속시기를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³¹⁾ 즉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 67 조 및 동령 제 106 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득처분’이라고 일컫는다.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소득은 그 과세후 당해 법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와 그것이 회사 밖으로 즉 사외로 유출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소득이 당해 법인에 남아 있는 것을 유보라 한다. 반대로 사외로 유출

31) 김완석, 2000, 법인세법론, (주) 광고아카데미, p.582~585

되는 것을 사외유출이라 한다. 사외유출은 그 법인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로 나누어진다.

2) 우리 나라의 양 회계의 논의 동향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를 주도하며 기업회계와 다른 세법의 규정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오다가 1994년 12월의 세법 개정에서는 이를 대폭 수용하게 되었다. 즉 법인세법 제17조 ③에서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기업회계의 세무회계에 대한 기준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는 종래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던 계산체계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온 획기적인 회계제도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는 외국의 경우 기준성의 문제로서 거론되었고 이러한 기준성의 문제는 개별적인 회계사안에 따라 세법의 규정형태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세법의 규정은 몇 개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기업회계를 세무회계에 대체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단순히 외국의 경우 개별적인 기준성의 문제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이라 하여 예외에 들지 않는 사항은 무조건 기업회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회계에 일대 변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점에서 외국의 기준성의 문제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법규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래 진행되어 오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논의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형성된 세무회계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동시에 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의 관행에도 여러 가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 2 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관한 조정방안

1. 정책적 목적에 의한 차이 조정방안

1)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소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정부는 경기의 부양책으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조세감면이나 특정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이다. 이러한 조세특례제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루어지고 조세특례법은 경기변동으로 인한 단기적인 처방을 위해 그 때마다 개정되고 변동되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행정법이 자주 개정되거나 변경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매년 혹은 일년에 두 번 이상 개정함으로 인한 세무(회계) 실무계의 혼잡비용은 물론이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개정이 개정을 낳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부족으로 공공정책이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지만, 단기적 처방을 위한 정부의 잦은 개입은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켜 조세감면이나 조세지원이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이는 어떤 정책이 정착되기도 전에 다른 정책을 수립하거나, 과거의 행정이 수년이 흐른 뒤에 다시 회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이러한 단기적 처방은 기업의 자생력을 잃게하고, 정책적 로비로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을 지원할 가능성으로 있기 때문에 조세의 평등주의를 저해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점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 중에 불필요한 사항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각종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들 준

비금은 일시적 차이에 불과하므로 단기간 내에 서로 손익이 상쇄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준비금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준비금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준비금 설정은 특정산업의 특혜라는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맞춰 공정치 못한 설정은 과감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역기능을 가진 조세특례제한법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과세와 개세주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기업의 자생력을 시장기능에 맡기므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알기 쉬운 세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세공과금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금 등은 법 또는 공공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세액만큼 금전형이 경감되어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이는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야기되는 법률적 위반행위에 대한 자산의 감소(현금)로 해당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되었으므로 당연히 손금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과 비교한다면 교통범칙금의 납부로 인하여 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처벌의 이중성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세액만큼 금전형이 경감된다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이지 벌금 등의 납부라는 행위자체(과정)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벌금 등은 과세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고정적 사고의 틀을 벗지 못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타 제세공과금은 세법에서 일일이 열거할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과금 및 법률에 의한 공과금은 모두 손비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기부금, 접대비 한도초과액

한도액을 규정하는 이유는 접대비를 무제한 인정하는 경우 조세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기업의 재무상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한도내만 손비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접대비의 지출은 법인세순이익계산이전에 발생하여 그러한 행위(지출)의 결과로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계산과는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세수입의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과는 별개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한도액이 재무상태와도 무관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한도를 초과하지 않겠다는 것 즉, 아껴 사용하겠다는 것은 경영인의 의지에 의해 접대비가 줄어들고 그 의지에 의해 재무상태가 건전화되는 것은 접대비의 절약사용 여부이지 한도액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이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전액손금으로 인정하고(기업의 순이익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으로 하기보다는)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용카드 미달사용액은 의무위반적 가산세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한도초과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결손법인인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초과액이나 신용카드미달사용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세부담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규제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실무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나 한도내의 금액은 접대비계정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비용은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으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리방법은 정당한 계정과목의 분류를 왜곡시켜 계정과목간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입법 당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기업의 총비용에 대한 과세자료제출 비율로 계산하는 가산세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양 회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예를 들어 매출원가나 제조원가를 포함한 기업회계상 비용총액 중 세금

계산서, 계산서, 금융기관의 온라인거래금액(계좌이체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근거과세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음성적인 비용은 일정율을 곱하여 가산세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손익의 인식기준에 따른 차이 조정방안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수익의 실현을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²⁾

이에 반하여 세법은 원칙적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다’³³⁾라고 규정하고 있고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형태별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하면 근래 세법의 개정으로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양 회계의 차이는 대부분 조정되고 기부금 등 일부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공권력체가 그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민경제 내부에서 생산된 부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수단이 조세이고, 이러한 조세의 징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득과세 체계인 사업소득세와 법인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법인세는 계속수입을 전제로 하고 계속적

32) 기업회계기준 제35조 제 1호, 제37조

33) 법인세법 제40조

인 조세수입은 기업의 존속은 요구하고 기업의 존속은 확대성장(확대재생산)을 전제로 한다.

확대성장은 순이익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처럼 중요한 기업의 순이익을 과세편의를 위해 확대 적용하거나 조기 인식한다면 세원의 고갈을 수반하여 지속적인 법인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법인세가 기업의 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과세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를 일이다.

이상과 같이 제 요인을 검토하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 기준으로 세법을 개정하여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을 일치시켜야 제살깍기식의 과세가 없어져 지속적인 조세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은 손익의 인식기준에 따른 양 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1) 수입이자의 발생주의 회계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이자는 일반법인인 경우와 금융기관인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통일하여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칙상 합당할 것이다.

즉, 현행 세법의 규정에서 일반법인의 경우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 선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처리방법에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고 수익의 경우에만 발생주의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과세당국의 잘못된 계산법에 해당하므로 과세의 조기실현이나 과세의 이연효과에 지나지 않는 기간손익에 대한 문제는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생각된다.

2) 감가상각비의 발생주의 회계

감가상각비의 계상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발생주의로 하도록 하는 것이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지속적인 법인세 수입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의 감면이나 특례를 받는 기업에 대하여는 강제(의제)상각제도를 두고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비용으로 계상한 것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또한 기업 실무에서 합리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조정이 없게 될 것이다.

3) 충당금의 발생주의 회계

세무회계에서 제 충당금의 발생주의 회계도입이다. 이 또한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다면 한 해 정도는 세금부담을 이연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기업의 경우에는 누적효과로 인하여 충당금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순이익이 일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 조정방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자본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1994년 및 1995년에 양 회계는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조정되었다.

1)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자산수증익 및 보험차익은 세법상 자본의 납입에 의한 순자산증가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일시에 과세한다면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세무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과 전기업자 등이 수요자 또는 편의자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 및 유형자산의 멸실 등에서 생기는 보험차익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자산 중 감

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와 토지와 같은 비상각자산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토지와 같은 비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있을 때 동 양도차익에 압축기장충당금상당액을 가산하고 양도차손이 있을 때에는 양도차손에서 압축기장충당금상당액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가산한다.

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정책적 지원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차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도록하고 있다.

2) 보험업 등에 의한 평가차익

현행 세법은 평가차익은 익금으로 하면서 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가 없는 세법에서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계산방법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와 같이 투자자산의 성격은 자본조정으로 상품, 유가증권, 채고자산 등 단기운용자산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 합병차익·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세무회계에서는 합병평가차익과 분할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산입항

목으로 하고 있고 기업회계에서도 발생일에 이익으로 환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인 면에서는 양 회계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합병평가차익이나 분할평가차익 중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세금의 이연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기업회계의 정액법 환입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 회계의 처리방법이 대동소이하고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 세법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¹⁰을 요약한 것이다.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부의 영업권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다만, 당해 손실이나 비용이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

4) 잉여금의 자본전입

세법에서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기업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이론

상 타당하므로 기업회계에서와 같이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여 양 회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무회계는 자본전입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들이 배정받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의제한다는 취지이나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 및 특별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차이 조정방안

1)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³⁴⁾

이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규정은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에 대한 경영자의 도덕성과 회사의 지배주주 개인소유화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에 해당되므로 양 회계가 통합되어 법인의 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 측면에서 존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 회계를 일치 시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34) 대법원 판례 87누 925, 1988.2.9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주익금이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현금유동성이 있는 임대법인은 세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유동성 어려운 법인은 세 부담이 많다. 즉,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의 예치와 동시에 차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이른바 기술소득으로 전락해버린 간주익금제도는 제정 당시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3) 과다경비

세무회계는 아래의 <참고>와 같이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다경비에 대한 규정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의 차이를 주장하는 요인 중 하나인 세무회계의 확실성(기업회계의 유연성에 비해)과 대치되는 규정이다.³⁵⁾

이와 같이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은 세무회계의 특징중의 하나인 확실성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가 불분명하고 지극히 과세편의주의적일 뿐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적으로 과세관청에 전부 위임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시급히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재벌 그룹사의 공통경비를 특정 기업이 부담하는 것에 한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1호³⁶⁾의 규정과 같이 적정하게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동액을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으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김진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공인회계사 1999. 12월호

36)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참고>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손비 중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 인건비
- ② 복리후생비
- ③ 여비 및 교육훈련비
- ④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 나.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그 비율에 의할 수 있다.
- ⑥ 위①내지 ⑤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4) 업무와 직접관련 없는 경비

법인세법 제27조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자율의사에 맡겨져야 한다.

5) 지배주주의 임원보수

법인의 행위능력에 의한 의결사항(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나 이사회)을 과세당국이 부인하는 것은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부인에 대한 합당한 논리가 없으므로 기업실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5. 기업이익 계상의 개선방안



1) 기업회계중심의 전환

세무회계는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를 가능한 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고, 기업회계 측면에서도 세무회계의 일반원칙이나 회계이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세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기업이 자주적 회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손익을 계상하는 시기에 있어서 기업회계는 수익을 실현주의, 비용을 발생주의로 하고 있고 세무회계는 익금을 권리확정으로 손금은 의무확정으로 계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에서는 상품등의 판매는 인도기준(기업회계기준 제42조)에 의하고 공사기간 또는 제조기간이 장기인 예약 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하고(기업회계기준 제42조 제1항), 세무

회계에서는 상품등의 판매는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도가능한 상태의 경우도 매출로 인식(법인세법 제40조 제2항)하고 있고, 장기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고(법인세법 제43조),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할부기준(이행도래일 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회계에서 계상하고 있는 수익과 비용의 시기를 세무회계에서 반대적 입장에서 표현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관찰하여 보면 기업회계에서 수익의 실현이 없는 것을 세무회계에서는 수익의 실현으로 보게되고, 기업회계의 비용은 발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마치 발생한 것처럼 계상할 수 있게 된다.

조세의 확보차원에서 세무회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권리의무확정주의로 인하여 기업의 계속성 원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업의 유지·발전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따라서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도 관계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여 귀속시기에 따른 손익의 인식기준을 기업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이 회계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2) 법 또는 행정상의 개선 방향

기업회계에 대한 세무회계의 배려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 제20조)라고 이미 실행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회계처리상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으로 기업회계는 세무회계에 맞도록 회계처리를 강요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업회계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 유발이나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을 바탕으로 기업 목적달성의 성과를 확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와 모순으로 인하여 회계실무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선을 제거하여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관련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방법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회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이익도 규모별로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기업이 선택한 회계방법은 기업의 실정에 맞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회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에 대한 항목은 극소화 되도록 법률로서, 명문화하여 세무회계의 실무와 기업회계의 실무를 일치시켜 기업의 실무자에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각종 여러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연구하였다. 기업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측정·기록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세법의 계산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의 근본적인 목적 외에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특정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부여 등과 같은 재정정책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 추가되어 있다.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이익을 바탕으로 세법에 입각한 조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이 확정되므로 두 회계는 서로 도움을 주어 관련성 있는 회계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로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회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기능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 다음은 양 회계의 차이로 인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요약해 보면,

첫째, 조특법상 각종 공제와 감면은 특정산업이나 특정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고, 각종 준비금은 과세의 이연효과에 지나지 않는 기간손익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단기적 처방으로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공평과세와 국민개세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양 회계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손익인식시기에 대한 차이는 기간손익에 대한 문제로서 어느 시점에 이익이나 손실로 인식하느냐 하는 차이일 뿐 기업영위기간에 발생하는 것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수익의 조기인식이나 비용의 이연으로 발

생되므로 계속적인 조세수입을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순이익을 세법에서 과세소득으로 받아들여 양 회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셋째, 자본의 개념에 의한 차이는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일치시키는 것이 조세협력비용과 조세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넷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차이 조정방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세무회계만의 고유한 처리방법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양 회계가 같을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부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이나 신용카드미달사용액 등과 같이 금액 과다만을 기준으로 하는 손금불산입항목은 기업이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과세로부터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과목의 분류를 왜곡시키고 성실하게 처리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일 뿐 아니라 결손법인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의무 위반적 가산세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 세법규정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많은 불편을 준다. 따라서 이는 소득공제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양 회계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를 요약해보면 일시적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점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재경부에서 다년간의 누적적 효과를 검정하여 일시적차이가 과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회계를 과감히 수용하여 양 회계를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회계환경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실제 양 회계의 관행을 토대로 판단할 때 우리 나라에서는 기업회계가 세무회계를 선도할 만큼 충분히 성숙되거나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현실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양 회계의 평면적인 비교에 앞서 기업회계 자체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의 경우처럼 기업회계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회계가 회계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면 기업회계가 세무회계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런 절차가 된다. 그 다음 양 회계의 목적이 다르고 이를 일치시키는 경우 그 역효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일치시키는 인위적 노력보다는 그 차이를 수용해야 양 회계가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당국에서는 현재와 같은 획일적 규정에 의한 무리한 일치화 방법보다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업회계를 세무회계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문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 회계의 일치화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졌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기룡,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익래·최춘식·김종국, 「세무회계실무」, 한국세무경영사, 1998
- 김석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경영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성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완석, 「법인세법론」, (주) 광고아카데미, 2000
- 문길모, 「법인의 세무회계」, 세경사, 1994
- 손상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세무학과, 2001
- 송쌍중, 「세무회계론」, 법문사, 1997
- 신찬수·정창모, 「법인세의 실무」, 삼일세무정보, 1999
- 신현걸, 「상장법인의 세무조정 현황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2002
- 오기수, 「실전세무회계」, 조세통람사, 1999
- 이근수, 「현대회계학원론」, 법문사, 1996
- 이상목, 「회계학강의」, 현대세무법인출판사, 1982
- 이송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0
- 이우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연구, 1997
- 「과세소득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5
-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2
- 조달영, 「법인세법정해」, 조세통람사, 1996
- 조성하·이방원, 「재무회계」, 무역경영사, 1998
- 조정환외2인 공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연구, 2000
- 지대식,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1999
- 황갑성, 「이연법인세회계가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외국문헌>



- 富岡幸雄, 「稅務會計總論」, 東京 : 森山書店, 1983
- 中田信正, 「稅效果會計入門」, 中央經濟社, 1999
- 武田隆二, 「確定決算主義と會計基準」, 企業會計, 1996
- AAA,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1957
- AICPA, 「Accounting Principle Board of Business Enterprise」
New York, 1970
- AICPA, 「Accounting for Income taxes: change is Coming」,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84
- Harold E. Arnett, 「Taxable Income vs. Financial Income : How Much Uniformity Can We Stand?」, The Account Review, 1969

ABSTRACT

A Study on Ways of Reconciling Corporate and Tax Accounting

Byung Cheol Cho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Mentored by Professor Jong Kwon Ko

This study has been undertaken by investigating various references and materials on issues pertinent to reconciling differences arising between corporate and tax accounting. The purpose of corporate accounting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facilitate economic decision making based upon reasonable judgments drawn by relevant person of corporates from financial data about the company concerned in line with accounting principles. On the converse, tax accounting has the purpose of calculating taxed income and taxes due in accordance with calculation rules for procuring budget for the state. Tax accounting, therefore, has a secondary purpose of carrying out fiscal policies such as upholding equity in allocating tax burden and allowing for tax exemptions for nurturing specific industry development, other than fundamental purposes it has.

Given that tax accounting performed results in deciding taxed income by adjustments principled in tax laws based upon income appropriated in terms of corporate accounting, the two separate accounting procedures

need mutually beneficial reconciliation, requiring continued and consistent studies.

In spite of such intimacy between, each accounting has differing purpose and function. Ways that must be pursued in light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ccounting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under the fiscal taxation law, all types of deductions and exemptions have the potential for favoring specific industries or corporates. As they are issues of profits and loss for a certain term, they must be either done away with or restricted.

Secondly, as difference in recognizing profits and loss in terms of time is an issue that may be raised concerning periodic profits and loss, it only matters as to when and at which point in time either profits or loss is recognized. Because there is no substantial difference during the business undertaking period, the net profits under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must be accommodated by tax law to synchronize the two.

Third, even the difference between understandings of capital may be synchronized together with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to help reduce conflicts with fiscal cooperative expenditures.

Finally, temporary difference may be one type of the largest differences to summarize the whole. In this respect, either the National Tax Agency or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needs to courageously accommodate corporate accounting to reconcile the two, if the resulting effects are proven minimal against taxes due in consideration of cumulative effects developed over the year.

In conclusion, together with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accounting environment in Korea, and determining based upon accounting practices under both, we are faced with the reality issue that Korea's corporate

accounting is yet to mature and develop in comparison with tax accounting. Therefore, unlike a single view comparison, much effort is required for researching and developing corporate accounting as in other n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accounting. Rather than pursuing a forced synchronization of the two as that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the authorities would need to undertake expert research to identify the benefits and loss of the corporate and tax accounting to develop standards of precision. Meanwhil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synchronization of the two accounting would need to continue, however.

